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사항 명시〉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73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24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30.
3. 회부연월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공급약관의 기재사항에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¹⁾

본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8772)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연계 법률안임.

해당 연계 법률안은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을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²⁾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 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부터 8.까지 (생 략)

※ 연계 법률안(의안번호 2218772) 안 제14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	개정안
하는 바에 따라 <u>전기요금</u> 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u>전기요금,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u>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제안이유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그 인가 기준을 네 개 호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인가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³⁾

-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 제78조에 선수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고 선납기간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선수금 제도의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선수금 제도 운영 실적]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객 호수(호)	6,392	4,160	3,974
선수금 입금액	343,559	273,290	393,347
지급 이자	876	990	1,11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 호수는 2023년 6,392호에서 2025년 3,974호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 입금액은 3,435억원에서 3,93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현행 약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선납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납을 유도하려는 것임.

4)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78조(선수금) ① 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수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2. 선납기간이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전기사용자의 선납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본공급약관의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과 하위 규범·약관과의 역할 배분, 선납에 따른 할인 수준과 한국전력공사의 자금 조달 여건 간의 관계, 현행 약관의 운영 방식과 개정 문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본공급약관의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과 하위 규범·약관과의 역할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제1항은 현행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으로 하여 약관에 담을 사항을 법률에 추가로 열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16조제1항은 약관의 내용을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가 각각 정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⁵⁾

5)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이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계약의 핵심 요소로서 약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인 것과 달리 선납제도는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도입하고 조정할 사항이고, 경영 자율성 보호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한국전력공사가 현행법 및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이미 선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실익이 크지 아니하며, 약관에 관한 조항에는 약관의 대표적 규정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만을 열거하는 것이 법령의 간결성·명확성 유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한편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전기사용자의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실익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선납에 따른 할인 수준과 한국전력공사의 자금 조달 여건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전제하는 선납의 유도는 전기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수반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선수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음.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선수금 적용 이자율]

(단위: %)

선납기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3개월 이하	0.10	0.10	0.10	0.10	0.08	0.08
3개월 초과 2년 미만	3.47	3.15	3.19	2.99	2.67	2.21
2년 초과	3.53	3.14	2.98	2.94	2.57	2.1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위 이자율은 기본공급약관 제78조제2항에 따라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을,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된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납 할인, 즉 선수금 이자율이 한국전력공사의 조달금리를 초과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는 사채의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2027년 12월 31일까지는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7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가 사채 발행의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6)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선납의 유도를 통하여 전력망 확충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사채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수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 약관의 운영 방식과 개정 문언 간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제1항은 약관에 담을 사항으로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을 규정하고 있음.⁷⁾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공급약관 제78조는 선수금에 대하여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선수금 납부 시 납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여 전기요금의 일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⁸⁾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생략)

7) 개정 전후의 문언은 다음과 같음.

〈현행〉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78조(선수금) ① 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수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2. 선납기간이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부터 4.까지 (생략)

아울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을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규정하는 “선납에 따른 할인”이 현행 약관의 이자 지급 방식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본 법률안이 연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연계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의 내용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